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56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하고, 제3장 각 조의 내용에 맞춰 제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함(안 제10조제3항)
- 제3장 각 조의 내용에 맞춰 제목을 수정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
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안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등)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5. (생략)

④ ~ ⑤ (생략)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생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② (생략)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위원 중 _____
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_____.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_____

_____.
_____ 제 8조에 따라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_____

_____ 따라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_____
_____ 위원 중 _____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_____.

1. ~ 5. (개정안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장 운행경유자동차 등 _____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

-----.

1. -----저공해 엔진 개조-----
----- 의무대상 자동차
2. -----

----- 의무대상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생략)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자동차. -----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 의무대상 자동차 -----

-----.
----- 저공해 조치
----- 의무대상 자동차-----
-----.

1. 배출가스저감장치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

-----.

② -----

----- 10퍼센트 이하
이거나 저공해 조치-----
----- 저공해 조치 -----
----- 10퍼센트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

_____.

③ _____ 따라 _____ 의무대상 자동차 _____
_____ 저공
해 조치_____.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_____ 의무대상 자동차 _____
_____ _____
_____ 의무대상 자동차 _____
_____ 저공해 조치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_____ 저공해 조치 _____
_____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_____
_____ 범위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개정안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개

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
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z시설
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범위-----
-----.

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조건등)”을 “(재정지원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저공해 엔진개조”를 “저공해엔진 개조”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후단 중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의무대상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를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각각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를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 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그 밖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u>저공해조치</u> 또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 ----- <u>제58조에 따른</u> ----- ----- <u>저공해 조치</u> ----- ----- ----- ----- ----- ----- -----.</p>
<p>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재정지원대상) ----- ----- 범위 ----- ----- ----- ----- ----- <u>제58조제3항에 따라</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u>시장</u>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5조(재정지원한도액) ----- ----- -----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제6조(재정지원조건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p>	<p>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항에 따라</u> ----- ----- -----</p>

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용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용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생략)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사무의 위탁 등) ① -----

----- 제2조제2호의 따른 -----

----- 범위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

----- 해당 연도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 중 -----

-----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

-----.

1. ~ 5. (생략)

④ ~ ⑤ (생략)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
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
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
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생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
여 자금을 대출 한다.

② (생략)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 제
8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

-----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운행경유자동차 등 -----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
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
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
다)로 한다. -----
-----.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 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 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동차.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 (생략)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

1. -----저공해엔진 개조-----
---- 의무대상 자동차
2. -----

----- 의무대상 자동차. --
----- 배출가스 저감장치-----
-----.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
의무대상 자동차 -----

----- 저공해 조치-----
-- 의무대상 자동차-----
-----.

1. 배출가스저감장치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

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

-----.

② -----

-----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 저공해 조치 -----
----- 10퍼센트 -----
-----.

③ ----- 따라 ----- 의무대상 자동차 -----
----- 저공해 조치-----.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 의무대상 자동차-----

----- 의무대상 자동차 -----
----- 저공해 조치-----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 저공해 조치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범위-----
-----.